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010. 8. 4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b>농림수산식품부령</b>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li> <li>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li> </ol> | <p><b>제1조(목적)</b>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곤충산업)</b>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의 사육업</li> <li>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판매업</li> <li>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판매업</li> <li>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판매업</li> <li>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li> </ol> |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곤충의 범위)</b>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li> <li>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li> </ol>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b>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li> <li>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li> <li>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li> </ol> | <p><b>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b> ① 법 제5조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p>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p> <p>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p> <p>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p> <p>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p> <p>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b>대통령령</b>으로 정한다.</p> | <p>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6조(실태조사 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b>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판매업체의 현황</li> <li>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판매업체의 현황</li> <li>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판매업체의 현황</li> <li>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li> <li>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li> <li>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p>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7조(전문인력의 양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사료와 수당</li> <li>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li> </ol> | <p><b>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b>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li> <li>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li> <li>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li> <li>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li> </ol> <p>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li> <li>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li> <li>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li> <li>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li> <li>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li> <li>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li> <li>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li> <li>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li> </ol> </li> <li>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i> </ol>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b>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p> |                       | <p><b>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p>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li> <li>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li> <li>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li> <li>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li> </ol> <p>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li> <li>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li> </ol>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                       | <p>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p> <p>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p> <p>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p> <p>2. 곤충을 사육·유통하려는 자나 사육·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p> <p>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b>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p> <p><b>②</b>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p> <p><b>③</b>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b>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b>②</b>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③</b>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장수풍뎅이</p> <p>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p> <p>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p> <p>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p> <p>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p> | <p><b>제5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b>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b>②</b>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③</b>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장수풍뎅이</p> <p>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p> <p>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p> <p>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p> <p>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b></p> <p>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 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b>농림수산식품부령</b>으로 정한다.</p> <p><b>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b></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p> |                       | <p>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p> <p><b>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b>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li> <li>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p> <p><b>제7조(예방조치)</b>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li> <li>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li> <li>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li> <li>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b>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li> <li>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li> </ol> |                       | <p>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li> <li>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의 설치</li> <li>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 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b>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p><b>제7조(권한의 위임)</b>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li> <li>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li> <li>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li> </ol> <p>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li> <li>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li> </ol>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b>제16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li> <li>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li> </ol> <p>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7조(과태료)</b>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p> | <p>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p> <p>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p> <p><b>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p> |                      |

| 법률(제10019호, '10.2.4)   | 시행령(제22325호, '10.8.4)  | 시행규칙(제136호, '10.8.4) |
|--|--|----------------------|
| <p>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 종류  |
|---------|---|
| 천적곤충    | 긴털이리응애, 꼬마무당벌레, 사막이리응애,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어비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칠성풀잠자리붙이, 담배장님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가는빨다리좀응애, 굴파리좀벌, 쌀좀알벌, 갈색반날개, 배노랑금좀벌,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은실가루이좀벌, 황은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미끝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참딱부리노린재, 예쁜가는배고치벌, 오리꽃등애,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응애잡이혹파리, 민깨알반날개, 싸리진디벌, 어리줄풀잠자리, 나팔이리응애, 명충알벌, 프루텔고치벌, 알깡충좀벌, 검정알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화분매개곤충  | 뒤영벌류, 꿀벌류, 빨가위벌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환경정화곤충  | 동애등애류, 소똥구리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식용·약용곤충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
| 학습·애완곤충 | 노린재류, 풍뎅이류, 개미류, 여치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수서곤충류, 귀뚜라미류, 꽃무지류, 메뚜기류, 물방개류, 매미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사료용 곤충  | 거저리류, 귀뚜라미류, 동애등애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그 밖의 동물 |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

[별표 2]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사육관리

가. 곤충의 종류, 크기, 특성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사육시설 또는 관리 시설을 갖추고 그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육·관리하는 곤충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병충·해충 관리

가. 병충·해충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곤충의 특성에 따른 진단, 소독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곤충에 질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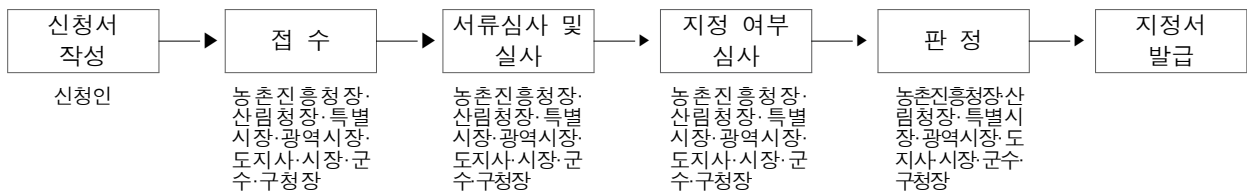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br>제출 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li> <li>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li> <li>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li> <li>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li> </ol> | 수수료<br><br>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접수일자 | 지정번호 | 발급일자 | 신 청 인 |            |     | 사무소<br>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기관명   | 대표자<br>성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처리기간 | 6개월 |
| 의뢰자             | 성명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대상<br>곤충        | 보통명 | 학 명    | 용 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해성 평가<br>의뢰 목적 |     |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귀하

##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     |
| 의뢰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대상<br>곤충     | 보통명 | 학 명    | 용 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해성<br>평가 결과 |     |        |      |     |
| 참고사항         |     |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직인

# 곤충의 [ ]사육업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신고서

(앞 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처리기간 | 5일 |
|------|-----|--------|------|----|

|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보통명 | 학 명 | 용 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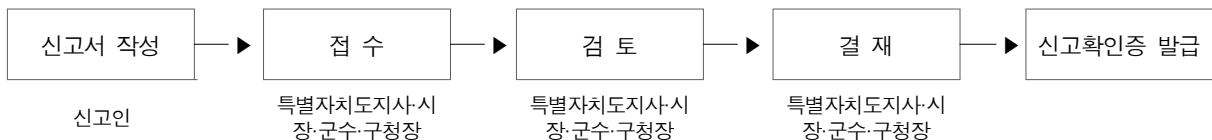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br>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수수료<br>없음 |
|------|---|-----------|

### 작성요령

1.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용도란에는 사육, 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
4. 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처리절차





제 호

곤충의 사육업 생산업 신고확인증  
가공업 유통업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보통명     | 학 명    | 용 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세  |         |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행령 제5조 제5항 고시>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0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 육성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제1호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교재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제1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확보) ① 전문교수 요원은 최소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곤충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내용에는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포함 하되 이론,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사진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 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붙임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 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시행령 제5조 제5항 관련)

1. 곤충 전문인력 교육과정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 구성의 순서   | 구성의 세부항목   |
|----------|--|
| (가) 제목   |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 (나) 소개   |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
| (다) 요약   |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 (라) 진행과정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br>○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br>○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br>○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br>○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br>○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br>※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 (마) 평가   |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br>○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br>○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 (바) 참고자료 |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br>○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 (사) 단어설명 |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

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10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 단계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1단계 | (가) 곤충의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의 분류</li> <li>○ 곤충의 생활사</li> <li>○ 곤충의 행동 및 감각</li> <li>○ 나비와 기주식물</li> <li>○ 곤충채집</li> <li>○ 곤충 기르기(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li> <li>○ 물에 사는 곤충</li> <li>○ 곤충생태 관광곤충의 산업동향</li> </ul>  | 50시간<br>(이론 80,<br>실습 20%)              |
|     | (나) 곤충산업화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용곤충자원의 분류, 탐색, 보전기술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li> <li>○ 유용곤충자원의 연중 사육법 및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법 개발</li> <li>○ 화분매개 곤충의 인공증식 및 현장 활용 기술체계 확립</li> <li>○ 환경정화 및 환경지표 곤충의 이용 기술 개발</li> <li>○ 애완, 정서, 희귀곤충 등 문화곤충으로의 이용 기술개발</li> <li>○ 천적곤충의 이용기술개발</li> <li>○ 식·약용 곤충 자원의 탐색 및 용도 개발</li> <li>○ 곤충 특이 기능성 유전자 및 단백질 탐색, 이용 기술개발</li> </ul> |   |
| 2단계 | (다)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뚜라미 사육키트, 나무곤충 만들기, 곤충 표본제작 등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트제작 설명 및 만들기</li> <li>-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등</li> </ul> </li> <li>○ 곤충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li> </ul>  | 35시간<br>(이론 25,<br>실습 75%,<br>현장 학습 3일) |
|     | (라) 현장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채집 및 관찰</li> <li>○ 곤충생태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 관리</li> <li>○ 곤충생태체험학습장 방문</li> </ul>   |   |
| 3단계 | (마)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체험학습지도 계획서 작성</li> <li>○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험교재(교구) 만들기 및 지도</li> <li>○ 안전교육, 야외 채집활동 지도</li> <li>○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환류 등 기타</li> </ul>  | 20시간(이론 40, 실습 60%)                     |

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 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들 수 있다.

라.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과목               | 전문강사 기준                              |
|--------------------|--------------------------------------|
| (가) 곤충의 이해         | 1. 곤충학 및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 등 강의 경험자       |
| (나) 곤충산업화 기술       | 2. 곤충학 및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 경력자 |
| (다)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 | 3. 곤충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
| (라) 현장학습           | 4.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
|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마.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붙임 제2호서식]

| 교육과정 수강료 게시 |      |     |                 |        |  |  |
|-------------|------|-----|-----------------|--------|--|--|
| 년           | 월    | 일   | 현재              |        |  |  |
| 인증<br>번호    | 교육과정 | 수강료 | 징수단위<br>(월, 분기) | 수강료 명세 |  |  |
|             |      |     |                 |        |  |  |
|             |      |     |                 |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0 년            월            일

0000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설·운영자 (서명 또는 인)

- 주 :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